

한국교육행정학회 소식지

THE NEWSLETTER

발행처 한국교육행정학회(www.keas.or.kr) / 주소 (02841) 서울 성북구 안암로 145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본관 213호
발행인 신현석 / 편집인 주영호, 정수현, 장아름, 홍세영, 김혜연, 안지윤 / TEL 010-6444-0805 / E-mail keas1967@hanmail.net

학회의 활동사항 및 학술대회 개최, 학회관련 업무는 홈페이지(www.keas.or.kr)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론 |

한국 교육행정 연구의 문제와 과제 그리고 학문공동체

신 현 석 | 본회 회장, 고려대학교 교수

교육행정 연구는 교육행정의 실제 현상을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과정이다. 과학적인 탐구는 기본적으로 현상에 대한 세밀한 관심과 의문으로부터 비롯된다. 그렇다고 과학적 탐구의 과정이 모든 연구에서 똑 같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탐구의 형식과 절차는 비슷할지 모르지만 무엇을 과학적이라고 보느냐에 따라 연구에 적용되는 논리와 방법이 달라진다. 과학적 탐구에 대한 이러한 다양한 관점은 본질적으로 연구자의 인식론적 철학관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Thomas Kuhn의 과학철학에서는 연구자들 간에 서로 구별되는 이러한 인식론적 관점을 패러다임(paradigm)이라고 했고, Habermas는 이들 패러다임 군을 크게 구조적, 해석적, 비판적 관점으로 제시한 바 있다. 오늘날 교육행정을 비롯한 사회과학 연구는 대체로 크게 논리실증주의를 배경으로 양적 연구방법을 주로 채택하는 구조적 패러다임, 현상학과 해석학을 바탕으로 질적 연구방법을 주로 채택하는 해석적 패러다임, 비판철학을 바탕으로 다양한 문헌고찰 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비판적 패러다임에 근거하고 있다(신현석, 1994).

1. 교육행정 연구의 문제

우리나라의 교육행정 연구는 1967년 한국교육행정학회가 창립된 이래 괄목할만한 양적 팽창과 질적 성장을 거듭해왔다. 그러나 한편으로 짧은 기간 동안의 눈부신 성장 뒤에는 여러 문제점들이 노정되고 있다.

첫째, 단기적인 안목에서 이루어지는 현실처방적이고 실제적인 연구(practical research and studies)가 대부분이다. 1983년도부터 2008년까지 교육행정학연구지에 게재된 연구논문들을 분석한 결과 실재중심의 연구가 전체의 90.86%에 이르렀고, 그중에서도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가 81.52%에 이를 정도로 현실처방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했다(신현석 외, 2009). 연구 주제별로는 학교행정 및 경영, 교육정책 및 기획, 고등교육 등 행정 및 정책실제에 관한 단기적 처방 연구가 많았다.

둘째, 연구에 활용되는 방법론의 편중이 극심하고 오용 및 남용 현상이 심각하다. 문헌고찰 연구방법(60.79%)이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 양적연구방법(32.55%)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상대적으로 질적 연구방법(4.94%)과 혼합연구방법(1.72%)은 극소수에 불과하다(신현석 외, 2009). 특히, 양적연구방법을 적용한 연구에서는 방법론을 왜, 언제, 어떻게 활용해야하는지에 대한 이해 없이 고급통계방법을 사용해야 연구의 질이 높아진다는 근거 없는 맹목적 믿음 때문에 통계방법의 오용과 남용이 심각한 상태이다.

셋째, 학문후속세대를 위한 교육행정 연구 및 방법론 교육이 부실하다. 교육행정학 교수들은 연구를 많이 수행하지만 대학원생들에 대한 연구교육은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정책연구를 많이 하는 교수들의 학생은 정책연구가 교육행정 연구의 모든 것으로 알고 있고, 연구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대학원 교육행정학 전공에 연구방법론 과목이 거의 개설되어 있지 않아 타 전공에서 방법론 교과를 이수하는 경우가 많거나(신현석, 2008), 아예 방법론 이수가 교육과정 이수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으로 되어 있어 지도교수에 의해 체계적으로 방법론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한마디로 교육행정 교수들이 방법론 교육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뜻이다. 타 전공에서 방법론 교과를 수강하게 되면 교육행정 현상 연구를 위한 방법론의 선택과 적용 과정에서 제대로 응용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교육행정 교수의 방법론에 대한 이해 부족은 학생들이 학위논문에서 활용하는 방법론에 대한 검증이 부실해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넷째, 단기적인 성과에 몰두하는 연구 경향에 의해 연구를 위한 연구를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연구실적을 요구하는 것으로 상징되는 경쟁적으로 강화된 대학들의 교수업적평가제, 정부 정책 사업에서 요구되는 교수들의 논문발표실적에 대한 비교·평가 등은 시간적으로 쫓기는 상황에서 교수들로 하여금 연구실적을 양산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나 국책연구기관에서 발주하는 정책연구들은 6개월 내외의 단기간 연구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정 주제에 대한 연구를 필생의 업으로 삼는 ‘한 우물 파기’ 연구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이에 많은 교육행정학자들이 단기 처방적인 개인 혹은 정책연구에 몰두하고, 방법론 면에서는 비교적 짧은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문헌고찰 혹은 일회성 설문조사에 의한 통계분석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2. 교육행정 연구의 개선과제

이상의 한국 교육행정 연구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개선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론의 개발과 검증’ 혹은 ‘모형의 개발과 적용’ 과 같이 학문탐구의 본질에 해당하는 연구의 비중이 높아져야 한다. 「교육행정학 연구」 학술지에 게재된 지난 25년간(1983-2008)의 연구논문들을 분석한 결과 ‘이론의 개발과 검증’에 관한 연구는 전체 논문의 6.77%, 모형의 개발과 적용에 관한 연구는 9.34%에 불과하였다(신현석 외, 2009). 이는 우리 교육행정의 연구풍토가 상당 부분 실제적, 처방적 연구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풍토는 오늘날 교육행정학의 학문적 기반을 공고히 하는데 구조적인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연구주제가 소수 인기 있는 영역에만 한정되지 않도록 교육행정 영역 전반에 걸쳐 연구의 관심을 폭넓게 기울일 필요가 있다.

둘째, 질적 연구방법과 혼합연구방법을 활용한 연구가 보다 활성화되어야 한다. 질적 연구방법은 연구 장면이 미시적이긴 하지만 교육행정 현장의 실재를 직접 관찰·분석하여 연구문제를 해결한다는 점에서 맥락 지향적이고 특수한 환경에서의 이론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론이다. 혼합연구방법은 양적연구방법의 장점인 연구 범위의 확장과 일반화를 취하면서 단점인 미세한 단위의 현상 분석과 맥락적 해석의 부족을 질적 연구방법의 적용으로 해소할 수 있는 장점 때문에 전도가 유망한 방법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적연구방법에 의존하는 경향이 오히려 강화되는 것은 실용적인 편리성 외에도 양적연구를 습관적으로 맹신하는 연구풍토와도 관련이 있다. 이러한 교육행정 연구방법의 편포성과 편식성은 교육행정 실재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관점의 부재로 이어져 현상의 본질을 왜곡하거나 편파적으로 이해하도록 이끌 수 있다. 미국의 교육행정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논문의 분석에서 양적연구방법이 31.8%, 질적 연구방법이 30.7%, 문헌연구방법이 34.4%, 혼합연구방법이 3.1%에 이른다는 사실은 우리 교육행정 연구의 방법론 활용에 귀중한 시사점을 던져준다(신현석, 2008).

셋째, 교육행정 연구 및 방법론 교육의 강화를 위한 연구자들의 자기반성과 제도적 노력이 요구된다. 학문후속 세대에 대한 연구교육이 부실한 이유는 기성 교수 및 학자들의 정책연구 추종과 실적주의 연구 풍토로 인한 자기 연구 몰두 때문이다. 정책연구의 경우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 연구는 대체로 단기간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교수들의 경우 학생 교육과 자기 연구에 몰두하기 힘들다는 부수적인 난점이 발생한다. 그리고 교수 인사 및 업적평가에서 요구되는 연구실적 때문에 자기 연구에 급급한 나머지 미래의 예비연구자인 대학원생들의 연구교육은 부차적인 것이 되기 십상이다. 교육행정 교수 및 연구자들의 자기반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편, 학문후속세대의 연구교육이 부실한 것은 연구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개별 연구(individual study or independent reading) 혹은 연구지도(research guidance)와 같은 교과목 부재에서도 비롯된다. 방법론 교육도 굳이 교육행정 전공 내에서의 교육행정연구법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방법론의 학습이 가능한 교과목이 지금보다 많이 개설되어야 한다.

넷째, 교육행정 연구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협동적인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학문 탐구의 경향 때문인지 몰라도 학계는 물론이고 실천의 세계인 관계·교육계에서 교육행정 연구에 대한 기대치는 그리 높지 않은 편이다. 교육행정 연구는 정부의 교육정책 형성 및 집행단계에서 요구되는 기획과 분석·평가가 주류를 이루고, 교육(행정) 기관에서 현실적으로 필요한 문제점 진단 및 방안 설계가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교육행정 연구에 있어서 현실처방적 연구(study)는 많은데 이론개발 연구(research)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러한 현상은 교육행정 연구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고, 누적적으로 교육행정학의 학적 기반을 부실하게 만드는 주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당장이라도 교육행정 연구의 질적 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교육행정학의 학문적 위상을 높이는 것이 시급한 당면과제이다. 이를 위해 우선 연구자들은 자기 연구에 대한 반성을 통해 학문 수준을 높이려는 성찰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학회는 세속적인 명성과 정책연구에 의존하는 관습적인 학회 운영에서 벗어나 학문을 하려는 학자들의 수준 높은 연구의 경연장이 되어야 한다. 연구재단에서는 장기적인 연구를 장려·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고, 정부와 대학은 ‘한 우물을 파는’ 장기 연구와 질적으로 수준 높은 기초·기반 연구가 우대될 수 있도록 각종 평가 및 인사제도 개선을 위해 공조할 필요가 있다.

3. 학문 공동체

이러한 한국 교육행정 연구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는데 우리 학문 공동체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선 우리가 학문 공동체의 구성 요건을 성실하게 실천해왔는지에 대한 의문과 회의를 갖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지금 업으로 하고 있는 것과 학문 공동체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위기의식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개인적으로 우리는 연구자로서 단기처방적인 연구과제와 행정 실체예의 참여로부터 자기 시간을 지켜내 침잠의 과정을 통해 연구자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연구주제를 발굴하고 이의 천착을 위해 얼마나 노력을 해왔는지 그리고 대학원에서 연구 교육을 위해 얼마나 애써왔는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또한 우리의 학문 공동체는 공적인 학회를 통해서 혹은 자발적으로 진지하게 아카데미한 학술풍토를 조성하고 실천해왔는지에 대해 반성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성찰과 반성은 개인과 공동체로서 그간 우리가 기울인 노력이 교육행정 현장의 문제를 개선하는데 그다지 실용적이지 못하고, 학문후속세대에게는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는 잠재된 인식으로 표현되는 ‘연구 행위가 실제와 이론으로부터의 괴리를 넘어 소외되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위기 현상에 대한 깨달음이다. 우리가 중요하다고 외치는 것들이 주변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외면 받는 것처럼 자존감에 상처를 주고 무기력감에 빠지게 하는 것도 없을 것이다.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서 혹시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의례히 그러려니 하는 생각에 타성에 젖다보면 위기는 더 이상 위기로 느껴지지 않고 생활의 일부로 의식과 기억의 저편으로 사라지게 된다. 결국 이제 남은 것은 연구자, 교수, 혹은 학자로서의 타이틀만 남게 된다. 우리 모두가 바라지 않는 아카데미즘의 실종이다.

교육행정학 학문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우리 모두는 소외적 존재로 남고 싶어 하지 않으며 이러한 실종 상태에 이르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 학문 연구자로서 ‘존재의 실종 상태’에 이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남이 우리의 연구 환경을 개선해주기를 기다리는 제도 개선을 통한 소극적인 대처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때가 아닌가 싶다.

우선 개인적으로 우리는 교육행정의 실제 현상을 맥락적으로 관찰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통해 과학적 탐구의 과정과 절차가 타당하고 신뢰로운 방법의 채택을 통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통해 새로운 발견 혹은 문제해결이 가능한 연구 결과를 획득하고, 결과의 축적을 통해 우리의 이론과 지식을 쌓아가는 데 기여를 하겠다는 각오와 실천이 필요하다. 또한 학문공동체로서 학회는 주도적으로 다양한 주제에 대한 관심 연구 집단이 형성되도록 촉매 역할을 하고, 연구의 시작과 과정을 지원하며, 그 성과가 공유되도록 기회의 창을 열어주는 매개 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연구자들이 수시로 모여 학구적인 토론과 교감을 나눌 수 있는 건전한 학술 풍토가 조성되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 논단 |

박근혜정부의 고등교육재정 GDP 대비 1% 확보정책과 반값등록금정책에 대한 중간평가

송기창 | 숙명여대 교수

고등교육재정과 관련된 박근혜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는 대학 특성화 및 재정지원 확대(국정과제 71), 대학 교육비 부담 경감(국정과제 58), 지방대학 지원 확대(국정과제 113) 등 세 가지였다. 이 세 가지 국정과제에는 여러 가지 세부과제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정부 고등교육재정 규모를 GDP 대비 1%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과 소득수준에 따라 맞춤형으로 반값등록금을 지원하는 것이었다.

1. 고등교육재정 GDP 대비 1% 수준 확보 정책

고등교육재정 GDP 대비 1% 수준 확보정책은 구체적인 확보방안이 제시된 바 없으며, 교육부의 업무보고에서 연도별 목표치가 제시된 정도였다. 교육부는 2013년 GDP 대비 고등교육재정 비율을 0.84%라고 전제하고, 2014년 0.90%, 2015년 0.94%, 2016년 0.97%를 거쳐 2017년 1.0%를 달성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그러나 고등교육재정 GDP 1% 확보정책에는 적어도 두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 하나는 2013년의 고등교육재정 GDP 대비 비율을 산정하는 기준이 불분명하거나 잘못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교육부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처럼 2013년 GDP 대비 고등교육재정 비율을 0.84%라고 보는 것은 교육계의 기대와 상당한 거리가 있었다. 다른 하나는 고등교육재정 GDP 1%를 확보하는 수단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재정확보수단이 없다는 것은 일반회계 예산편성과정을 통해서 재정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로 보이나, 일반회계 예산편성과정을 통한 재정 확보는 안정성을 가지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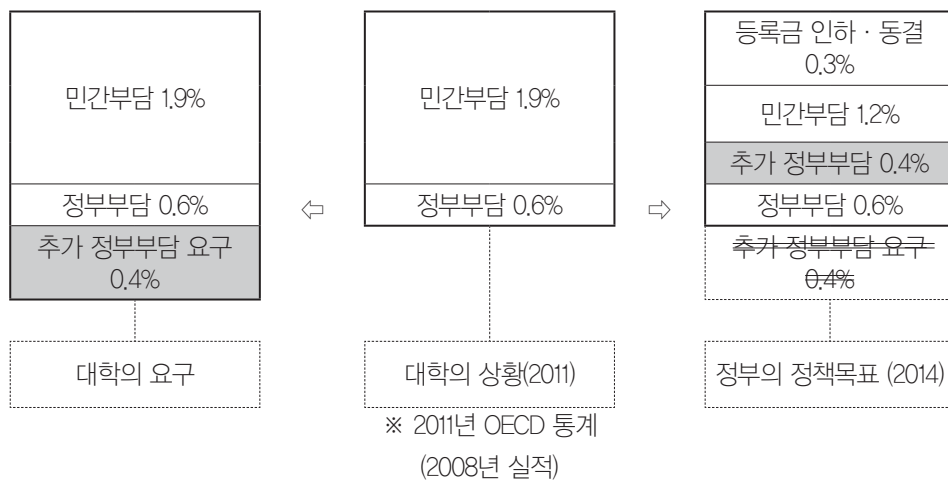
고등교육재정의 확보목표가 GDP 대비 1%로 설정된 것은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하고, 우리나라 교육통계가 OECD 교육통계연보에 실리기 시작한 2000년 이후다. 2001년 이후, 고등교육재정 GDP 대비 1% 확보는 일종의 신화처럼 여겨졌고, 2012년 새누리당이 대통령선거공약으로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고등교육재정 GDP 1% 확보는 정책공약이라기보다는 정책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고등교육재정 GDP 1% 확보를 통해 고등교육재정 규모가 얼마나 증액되느냐에 따라 고등교육에 대한 정책공약의 이행정도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고등교육재정 GDP 대비 1% 확보로 추가되는 재정규모가 중요하며, 이는 GDP 대비 1% 확보를 언제부터 시작하여 언제까지 달성하느냐로 결정된다.

* 이 논단은 2016년도 학회 소석논문상 수상작인 “박근혜 정부 고등교육재정정책의 쟁점과 과제” (송기창, 교육행정학연구 31권3호)를 기초로 작성되었음.

교육계의 요구는 2011년 OECD 교육통계(2008년 통계자료)를 근거로 정부투자 GDP 대비 0.6%를 1.0%로 0.4%p 증액해달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2012년 국가장학금제도가 도입된 후, 학생등록금이 인하·동결되고 등록금의 상당 부분이 국가장학금으로 대체되면서 정부의 고등교육재정 규모는 늘었으나, 고등교육기관의 교육비규모는 오히려 줄어드는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였고, 종전에는 타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 고등교육재정 규모를 파악하지 못하여 정부통계에 포함시키지 못했으나, 고등교육재정지원정보시스템(<https://hiedsupport.kedi.re.kr>)이 구축되어 교육부는 물론, 타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한 고등교육재정 실적을 조사하여 정부통계에 포함시킴으로써 정부재정규모가 늘어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교육계가 고등교육재정을 OECD 기준인 GDP 대비 1%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할 때, GDP 1%라는 수치보다는 당시 고등교육재정 규모 0.6%를 기준으로 하여 추가로 GDP 대비 0.4%p를 확보하여 대학에 지원해달라는 요구였다. 표면적으로 고등교육재정의 GDP 대비 비율은 올라갔지만, 기대했던 고등교육재정의 확충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국가장학금을 제외하면 GDP 대비 고등교육재정 비율은 낮아졌으며, 학생등록금 채원의 일부가 국가장학금 재원으로 전환되었을 뿐이다. 교육계의 의도는 GDP 대비 비율 자체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고등교육재정 확충에 있었고, 고등교육기관의 재정규모 변화에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책의 본질이 사라지는 결과가 되었다.

[그림 1]에서 보듯이, 교육계의 요구는 2011년 OECD 교육지표의 GDP 대비 고등교육재정 비율(2008년 기준 통계) 2.5%를 2.9%로 증액해달라는 것이었다. 고등교육의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학생 1인당 교육비를 늘려야 하나, 등록금 수준이 한계에 왔기 때문에 더 인상할 여력이 없다고 보고, 정부의 재정지원 확충을 통해 고등교육재정 총량규모를 늘리고자 했던 것이다. 국가가 장학금을 지원함으로써 민간부담 비율 1.9%를 1.2%로 낮춰달라는 것이 아니었다. 이는 반값등록금 정책의 논리일 수 있으나, 고등교육재정 GDP 대비 1% 수준 확보 정책의 논리는 아니었다.



[그림 1] 고등교육재정 GDP 1% 개념

2.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등록금 정책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 등록금 정책은 소득수준에 따른 맞춤형으로 국가장학금을 지원하여 등록금 부담을 반값으로 낮추겠다는 정책으로,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지원을 확대하여 2014년 대학생 등록금 부담을 절반 수준으로 경감을 추진하되, 소득 8분위까지는 소득과 연계하여 지원금액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장학금 수혜에 대한 체감도를 높이고, 긴급 가계곤란, 생계형 아르바이트 등 학업에 몰입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학생에 대하여는 성적기준(현행 B0)의 완화를 검토하며, 2014년부터는 셋째아이 이상에 대하여 대학 등록금을 지원하여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 경감 및 출산율을 제고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교육부가 반값등록금을 산출하는 기준이 교육계와 차이가 있었다. 반값등록금을 산출하는 등록금의 기준연도를 2011년으로 설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나, 정부가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하는 반값 등록금액의 기준을 2011년도의 등록금총액의 반액으로 정할 것인지(민주당 안), 아니면 등록금총액의 반액과 장학금액의 차액으로 정할 것인지(교육부 안)에 대하여는 교육계의 합의안이 존재하지 않았다. 어떤 안으로 반값등록금의 기준을 삼을 것인가에 따라서 정부가 추가로 확보해야 할 국가장학금 규모에 1조원 이상 차이가 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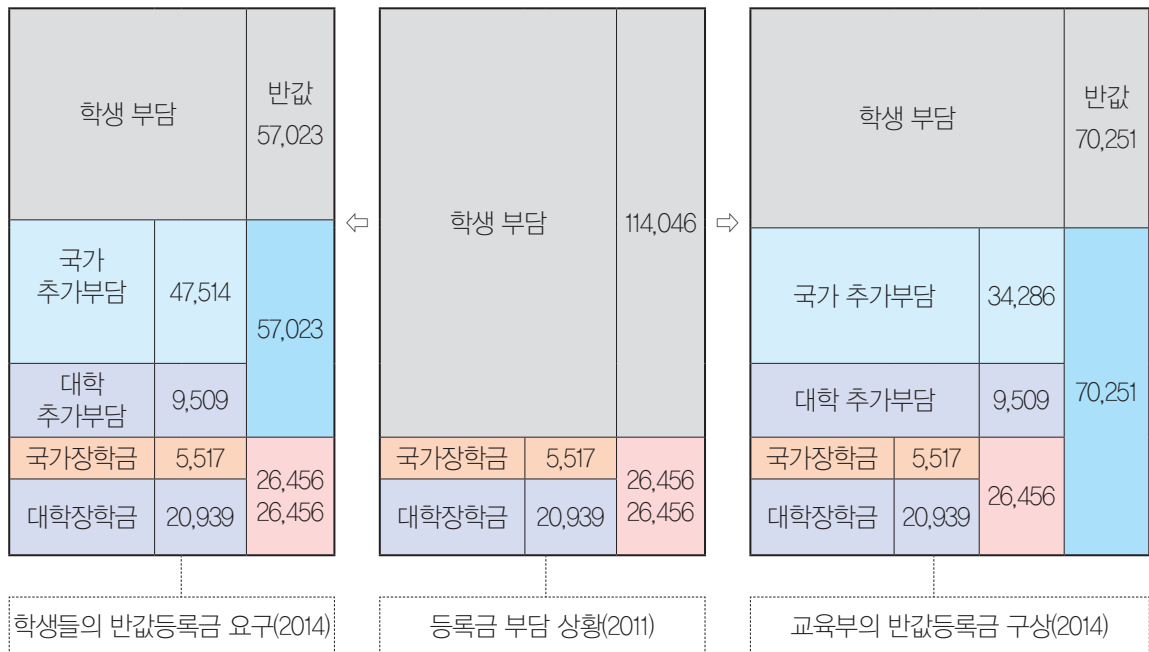
반값등록금 논의가 시작된 것은 2006년 지방선거과정이라고 볼 수 있지만, 정당 차원의 논의였으며, 정부의 정책으로 전환되지는 못했다. 학생들 사이에서 반값등록금 주장이 계속되는 가운데 2011년 6월 23일 당시 여당이던 한나라당은 2014년까지 6조 8,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대학등록금을 30% 이상 인하하는 내용의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 대책’을 발표하였고, 2011년 9월 8일 당시 교육과학기술부는 한나라당과의 당정협의를 거쳐 1조 5,000억원의 국가장학금과 7,500억원 이상의 대학 자구노력을 포함한 2조 2,500억원 이상의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정부가 대학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정책을 시행한 것은 2012년부터라고 볼 수 있으므로 반값등록금의 기준연도는 2011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대학정보공시사이트인 대학알리미의 대학별 등록금 자료를 종합해보면, 2011년 등록금 총액은 14조 502억원(단기수강료, 대학원 등록금 제외)이고, 장학금 총액은 국가장학금 5,517억원, 교외장학금 1,525억원, 교내장학금 1조 9,414억원 등 2조 6,456억원이다. 따라서 학생 실부담 등록금총액은 11조 4,046억원이 된다. 교육부는 2011년 기준으로 학생의 등록금 부담(14조 502억원)을 절반으로 낮추는 것이므로 학생부담액을 11조 4,046억원에서 7조 251억원으로 낮추는 것을 반값등록금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즉, 2011년 장학금 총액 2조 6,456억원을 제외하고 나머진 4조 3,795억원을 정부가 부담하면 반값등록금이 완성된다고 보는 것이다.

2011년에 정부가 부담하던 국가장학금 5,517억원을 포함하면 목표연도에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국가장학금 규모는 4조 9,312억원이나, 국가장학금 II유형으로 대학의 등록금 인화와 장학금 증액을 압박한 결과, 2012년에 등록금총액이 6,110억원 인하되었고, 교내장학금이 3,399억원 증액되었으므로, 목표연도에 국가가 실제로 부담해야 하는 장학금 규모는 3조 9,803억원이 된다는 것이다.

반면, 학생들의 요구는 학생들이 부담하고 있던 등록금 총액 11조 4,046억원을 절반인 5조 7,023억원으로 낮춰달라는 것이었다. 목표연도에 국가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국가장학금 규모는 대학의 등록금 인하분과 교외 및 교내장학금 확충분 9,509억원을 제외하면 4조 7,514억원이 된다(2011년 국가장학금 5,517억원을 합하면, 목표연도의 국가장학금 규모는 5조 3,031억원이 될 것이다).

요컨대, 학생들이 요구했던 반값등록금은 2011년에 학생들이 실제로 부담하고 있는 등록금(11조 4,046억원)을 절반인 5조 7,023억원으로 낮춰 달라는 것으로, 대학의 등록금 인하분과 교외 및 교내장학금 확충분 9,509억원을 제외하고 국가가 4조 7,514억원 추가 부담분을 포함해서 5조 3,031억원 부담해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교육부는 학생등록금 부담을 2011년 등록금총액(14조 502억원)의 절반인 7조 251억원으로 낮춰달라는 것으로 해석하여 대학의 등록금 인하분과 교외 및 교내장학금 확충분 9,509억원을 제외하고 목표연도에 국가가 부담할 장학금 규모를 3조 9,803억원으로 설정함으로써 학생들의 입장과 교육부의 입장 사이에는 1조 3,228억원의 차이가 나고 있다.



[그림 2] 반값등록금의 개념

3. 고등교육재정 GDP 대비 1% 확보와 반값등록금 정책의 결과

고등교육재정 GDP 대비 1% 확보정책은 반값등록금 정책과 맞물리면서 교육계의 의도와는 달리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2012년 국가장학금제도가 도입된 후, 학생등록금이 인하·동결되고 등록금의 상당부분이 국가장학금으로 대체되면서 정부의 고등교육재정 규모는 늘었으나, 고등교육기관의 교육비 총액은 오히려 줄어드는 상황이 초래되었고, 종전에는 파악하지 못했던 타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고등교육재정 지원규모가 드러남으로써 고등교육재정 GDP 대비 1% 확보정책은 별다른 효과를 주지 못했다. 국가장학금이 늘어나면 가만히 있어도 정부부담이 GDP 1% 규모로 증가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당초 교육계가 주장했던 GDP 1% 확보정책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이다. 정부부담은 늘어났으나, 고등교육비 총액은 오히려 줄어드는 역설적인 결과가 초래되었다. 결국 고

고등교육재정 GDP 대비 1% 확보정책은 반값등록금 정책과 맞물리면서 고등교육재정 확충과 무관한 정책이 되고 말았다. 공약은 달성되었으나 공약의 효과는 없는 이상한 상황이 된 것이다.

2015년 OECD 교육통계에 의하면, 우리의 2012년도 GDP 대비 대학교육비 정부부담 비율은 전년 대비 0.1%p 증가하였지만, 민간부담 비율이 0.4%p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2.6%에서 2.3%로 0.3%p 감소하였다. 학생 1인당 대학교육비도 전년보다 0.6% 감소하여 7.7% 증가한 OECD 평균과 대조를 이룬다. 결과적으로, 학생 1인당 대학교육비 수준은 OECD 평균의 71%에서 66%로 낮아짐으로써 격차가 더 벌어졌다. 2013년 대학교육비 통계가 나오면 더 심각한 상황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고등교육재정을 GDP 대비 1% 수준으로 확충하는 정책을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비 총액은 오히려 줄어들었으므로 정책이 고등교육비 총량규모를 확대하는 데는 실패하였다.

반값등록금의 경우, 교육부는 2014년까지 달성하겠다는 계획보다 1년 늦어진 2015년에 달성한 것으로 선언하였다. 2015년도 국가장학금 규모가 3조 9,120억원(교육부 3조 8,456억원, 미래부 이공계 우수장학금 664억원)이므로 맞춤형 반값등록금이 금액상으로 완성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면,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의 명칭과 부합되지 않는 장학금을 합산하여 억지로 짜 맞추는 흔적이 있다. 2015년 교육부의 국가장학금 속에는 소득연계형이 아닌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161억원, 대학생 근로장학금 2,095억원, 중소기업 취업전제 희망사다리 장학금 200억원이 포함되어 있고, 미래부 이공계 우수장학금 664억원까지 곁어모아서 3조 9천억원을 억지로 짜 맞추는 것이다. 엄밀히 말하면 교육부가 스스로 밝혀왔던 반값등록금 기준에 3,000억원이 부족한 것이다. 2016년에 국가장학금이 990억원 증가했으나, 근로장학금이 411억원, 우수학생 국가장학금이 20억원, 희망사다리장학금이 13억원 늘었고, 소득연계형 장학금은 다자녀 장학금이 546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2016년 기준으로 2,500억원 가량 반값등록금에 미달한다고 볼 수 있다.

국가장학금이 2,500억원 정도 미달함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4년 동안 3조 5천여 억원을 증액하여 국가장학금에 투입한 것은 대단한 일임에 틀림없다. 국가장학금 증액으로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이 획기적으로 경감되었고, 반값등록금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소득계층의 경우에도 반값등록금 정책과 함께 시행된 대학등록금 인하·동결정책으로 20% 이상 등록금 인하혜택을 입었다.

그러나 반값등록금 정책의 일환으로 대학에 대하여 강요한 등록금 인하·동결정책은 많은 부작용을 야기하였다. 대부분의 사립대학에서는 몇 년째 교직원 보수가 동결되었고, 각종 교육프로그램이 폐지되거나 축소되었으며, 졸업이수학점이 인하되었고, 복수전공을 억제하고 선택과목수가 줄어든 반면 강좌당 학생수는 늘어났다. 반값등록금이 반값교육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반값등록금의 저주가 시작된 것이다.

등록금 인하·동결정책은 설립별로 차등 적용된 측면이 있다.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등록금 인하·동결정책은 설립별로 동일하게 적용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국가가 등록금 인하·동결 정책을 시행하면서 국립대학에 대해서는 재정결손분을 지원하였기 때문에 사립대학들만 등록금 인하·동결의 피해를 떠안은 결과가 되었다. 국립대학의 경우, 등록금 인하·동결로 인한 재정결손을 국가지원금을 증액하여 국가가 보전함으로써 등록금 인하·동결정책의 영향을 안 받거나 덜 받았다. 2010년 이후 국립대학 운영경비 지원금은 매년 증액되었고, 2010년 대비 2015년 지원금 비율은 경상가로 128.9%이며, 매년 평균 5.2%씩 증액되었다. 반면, 사립대학의 경우, 재정결손을 보전할 방법이 없으므로 등록금 인하·동결은 재정감소로 이어져 교육의 질 저하로 귀결되었다. 2010년 이후 사립대학 운영수입 중 등록금 및 전입금 수입은 감소했거나 소폭 증가함으로써 2010년 대비 2015년 수입 비율은 경상가로

101.0%에 불과하며, 매년 평균 0.2%씩 증액됨(2010년 기준으로 5년 동안 386억원 감소함).

〈표〉 국립대학 운영지원과 사립대학 등록금·전입금 수입 변화추이 비교

(단위 : 억원,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5/2010 (%)
국립대학 운영지원(억원)	23,205	24,633	25,549	27,394	27,729	29,903	128.9
전년대비 증감률(%)	—	6.2	3.7	7.2	1.2	7.8	5.2
사립대학 기본 운영수입(억원)	125,223	125,466	124,775	123,873	125,095	126,520	101.0
전년대비 증감률(%)	—	0.2	-0.6	-0.7	1.0	1.1	0.2

주: 1) 국립대운영지원은 서울대, 국립대부설학교 지원비 포함한 국립대학에 대한 국가의 기본경비, 인건비, 실험실습기자재비, 성과급, 시간강사비, 시설확충비 등 지원을 말함.

2) 사립대 기본운영수입은 등록금 및 수강료수입과 법인전입금 수입 결산액(2015년은 예산액)을 합한 금액을 말함

자료: 교육부(각연도), 교육예산 및 기금개요; 한국사학진흥재단(각연도), 사립대학재정통계연보

결론적으로 볼 때, 박근혜정부의 대학교육재정정책은 학비부담을 경감하는 정책목표에 치중한 나머지 대학재정 정책의 본질은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지원 기능을 포기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고등교육재정 GDP 1% 수준 확보정책은 반값등록금정책과 맞물려 오히려 고등교육비 총량규모를 줄이는 결과를 가져왔고, 반값등록금정책과 함께 시행된 등록금 인하·동결정책의 여파로 대학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징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특히 국립 대학에 비해 사립대학이 더 큰 부작용을 겪게 됨으로써 사립학교 비율이 높은 우리의 여건에 비추어볼 때 대학교육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 논단 |

校權이 살아야 敎權이 산다¹

김희규 | 신라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오늘날 학교 개혁의 화두는 단위학교의 권한 및 자율성 확대, 그리고 책무성 강화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글로벌 교육환경의 변화가 가속화되면서 학교체제도 산업사회에 적합한 구조에서 지식융합사회 요구 사항으로 변하고 있다. 더구나 학교조직은 기능의 분화와 구조적 복잡성으로 인해 종래의 획일적 통제로부터 개인의 특성이 존중되고 다양성을 추구하는 자율화의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학교교육에서 자율적인 인간을 기르는 것이 교육의 중요한 목표라고 볼 때 교수-학습 활동을 포함하여 학급 및 학교경영, 각종 정책 결정 및 추진 등 전체 교육운영과정에서 자율은 강조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시대적 조류에 따라 교육부와 교육청에 집중된 권한을 단위학교로 위임하고, 단위학교의 의사결정과정에 교육공동체의 참여를 유도하는 등 단위학교 자율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가시화되고 있다. 그 동안 현장 교원들은 중앙집권적이고 획일적인 분위기로 인해 의존적이고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거나,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노력을 소홀히 한 측면도 있다. 이로 인해 교원이나 학생들은 일부 타율적이고 비민주적인 사고방식과 분위기에 익숙해져 있다.

이제 종래의 방식에서 탈피하여 점차로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향으로 나가려는 단위학교의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학교 변화의 밑거름은 교육공동체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자율적인 학교운영이라 할 수 있다. 단위학교에서는 교육에 대한 내적 기대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는 전략과 과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여, 학생의 꿈과 끼를 발현할 수 있는 학생 행복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단위학교 운영상의 질적인 패턴의 변화 없이 오히려 중앙과 지방의 힘이 더욱 커지는 기이한 현상을 초래하기도 한다. 이른바 ‘집권화된 분권화’ 내지는 ‘획일적 자율화’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또한 외부적 통제의 해제 내지 완화와 함께 살펴보아야 할 것은 학교조직 내에 작용하는 내부적 통제를 얼마나 조화롭게 변화시켜 나가느냐에 관한 일이다. 제 아무리 규제가 철폐·완화되고, 단위 학교에 권한과 자율이 부여된다고 하더라도 학교의 핵심기술(core technology)인 교수-학습의 방법에 여전히 관료적 통제나 위계적 책무성 장치들만이 공허하게 작용하고 있다면 이는 학교교육의 질적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실질적 자율화 내지는 세련된 선진형 책무성을 확보한 정책이 아닐 것이다.

학교의 권한 확보는 국가나 지방의 획일화된 교육정책에서 탈피하여 자율성과 다양성에 기반을 둔 단위학교 중

¹ 이 글은 필자가 새교육(2015년 2월호)에 기고한 내용 중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임.

심의 책임운영체제이기에 공교육의 신뢰 구축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더구나 이 시점에서는 단위학교에서의 교권(敎權) 뿐만 아니라 학교의 권한, 학교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교권(校權)이 중요한 때이다. 교권(校權)은 단위 학교의 자율성 부여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기에 학교가 자율권을 가지고 실질적인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는 ‘형식의 자율화’가 아닌 ‘내용의 자율화’를 정착할 수 방안이기도 하다.

특히, 학교의 자율화에 관한 논의는 교육에 관한 모든 결정권을 학교에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선발이나 재정확보, 교육과정 운영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학교결정권을 허용하는 문제이다. 학교 자율화의 용어가 실질적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논의의 초점이 되는 특정 사안 즉, 자율적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안건의 내용이 무엇이며, 그것에 관한 자율적 결정을 제약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명료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학교의 자율화는 학교구성원들이 주체가 되어 학교경영의 핵심 영역인 교육과정 및 교수관리, 학생 및 지원 인사 관리, 학교와 지역사회와의 관계, 교직원 능력개발, 행·재정 및 시설관리 등에 관한 실천 행위를 외부의 지시나 간섭을 배제하고 참여적 의사결정 속에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한 후 그 결과에 대해 책무성을 다하는 것이다.

단위학교 자율경영체제가 확립되기 위해서는 단위학교에 운영의 권한을 확대하고, 관련 법령 체제도 학생·학부모 등 수요자와 단위학교의 자율화를 지원하는 것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이에 당장 폐지할 경우 공교육에 미치는 효과가 크고 현장의 수용여건이 조성되지 않았거나, 관계부처와의 협의·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법령·지침은 단계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 즉, 단위학교중심의 교육과정편성·운영권, 인사권, 행·재정 편성·운용권 등 학교운영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단위학교에 교육과정·교수학습·교육평가 운영의 자율권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은 국가수준의 공통필수에 관한 부분을 규정하여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거의 모든 학교에서 동일한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에 대해 이수할 교과목의 종류, 수준, 범위, 분량, 시기, 수단, 시간 등을 과잉 규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진정한 교육과정의 자율화를 위해서는 교사가 담당하고 있는 학생들의 요구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필요한 수업 자료 및 방법을 교사들이 선택하고, 각 학년, 각 교과에서 성취해야할 목표를 제시하고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한 평가 방안을 일선 학교와 교사들에게 맡기는 단계적 자율화가 필요하다.

둘째, 단위학교 중심의 자율적인 인사 권한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인사 자율화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학교 운영에 필요한 교원들을 초빙하여 책임있는 학교 운영을 유도하는 것이다. 그 일환으로 도입된 교원초빙제는 일부 ‘내사람 챙기기’ 식의 인사로 오해를 가져오거나 혹은 전입과 전출의 불일치로 학교간 교사 이동의 쓸림을 초래할 수도 있으며, 새로 부임하는 교장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도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지금까지 학교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순위에 의해 교육청에서 교원을 배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선발한 인원 중에서 해당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과 특성을 지니고 있는 교원을 선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기존의 체제 속에서는 다양한 이유 등으로 실현 가능성이 희박해 보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학교의 여건 및 교원 수급 현황을 적절히 고려하여 학교·지역단위의 교원인사 및 학생선발 방식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단위학교에 예산·운용의 자율성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학교 자율화 추진 방안에서는 예산에 관한 부분은 거의 다루고 있지 않고 있다. 학교교육비 확대 및 목적사업비 축소를 통한 예산 관련 자율성 확대와 함께 예산 편성의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학교 자율화를 위해 필요하다. 예·결산 심의에 대한 관심 및 이해부족은

단위학교의 재정을 특정인에게 위임하는 격이 되어 재정의 독재적인 운영을 가져오는 문제점을 놓고 있다. 따라서 예산의 자율화는 학교구성원의 의지를 반영할 수 있는 채널 구축 속에서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전문적 운용의 최적화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넷째, 자율적 학교운영을 위한 지원체제가 확보되어야 한다. 시대적 조류에 비추어 볼 때 학교는 교실 수업과 교원의 학습을 통한 통합적인 환경체제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자율적인 학교운영을 위해서는 학교와 교육청의 관계는 기존의 위계적 관계에서 벗어나 수평적 관계가 형성되어야 하며, 따라서 관리·감독이 아닌 일선 학교를 지원하는 형태로 교육청의 역할과 기능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의 일환으로 시·도교육청의 조직 및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용하도록 하는 총액 인건비제와 교육지원청의 서비스 기능의 강화를 들 수 있다. 따라서 진정한 학교 자율화를 담아내기 위해서는 시·도교육청의 직원수를 대폭 줄이는 한편, 정책기획 기능에 초점을 두는 형태로 역할 변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교육지원청 역시 직원의 인원을 줄이고 이들 인원을 일선 학교로 재배치하여 일선 학교의 업무를 경감하고 학교를 지원하는 역할에 치중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단위학교 중심의 교육공동체 자율화를 구축해야 한다. 교권(校權)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교원과 학생, 그리고 학부모 등 교육 주체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단순 규제의 완화에 그친다면 이는 형식적 자율화에 그칠 수밖에 없다. 나아가 학교장의 권한 행사에 대한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학교 자율화를 학교공동체 자율화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학교구성원들의 역할 변화는 상호존중과 배려에서 비롯되어 진다. 학교의 본질 회복은 학교구성원들의 상호신뢰에 기반한 소통과 공감, 그리고 협력문화의 구축 속에서 교직원, 학생·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공유된 교육 활동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미래에 요구되는 학교는 학생의 학습 능력과 학습 자발성을 신뢰하고 존중하며, 주체적 학습활동을 정당화하는 학습주의 철학을 중시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학습주의는 학교교육을 학습자 스스로 수행하는 학습 패러다임으로써의 전환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우선 학교에서 학습중심의 학교경영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일상적인 관례에서 전문가 학습공동체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교육기관의 자율성은 주로 감독관청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으나, 사안에 따라서는 학교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또 다른 요소들도 있을 수 있다. 이에 학교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율적 결정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고 그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부 요소들을 파악하여 그 영향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외부의 지나친 간섭이 없다고 하더라도 학교구성원들의 의사가 하나로 결집되지 못하면 학교의 자율화는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의견의 차이를 대화와 설득을 통해서 조정하는 합리적 의사결정의 관행과 토론문화를 정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사항들을 논의하고 현장 차근을 위한 대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에 있다. 교권(校權) 확보를 위한 자율화의 진정한 가치는 지속적인 관계와 소통에서 찾을 수 있기에 집단적 공감과 협력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교육과학기술부(2009). 학교단위 책임경영을 위한 학교자율화 추진방안. 교육과학기술부.
- 박재운 외(2010). 학교자율화 정책의 추진실태와 개선방안.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RR2010-1.
- 박종필(2010). 학교운영의 자율성과 책무성. 한국교육행정학회 제157차 학술대회 자료집.
- 신상명 외(2009). 학교 자율 경영. 원미사.
- 신차균(2008). 자율의 이념과 교육기관의 자율성. 국민대학교 교육논총.
- 이경호 외(2012).전문가학습공동체가 학교혁신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 교육정치학연구, 19(4). 133-153.
- 정제영(2008). 학교 자율화의 쟁점과 주요 과제. 교육행정학연구. 26(2). 415-435.
- 홍후조(2009). 우수학교 교육과정 자율화를 위한 제언. 교육정책포럼 제 188호. 한국교육개발원.
- Beck, L. G(1995). School-Based Management as School Reform, Corwin Press.
- Hargreaves, A.(1997). Rethinking educational change with heart and mind. Alexandria, virginia: ASCD.
- CERI(2006). The Starter pack:: Futures thinking in action, OECD.
- Senge, P.M. (2000), A fifth discipline: schools that learn New York: Currency Doubleday.

• 2016년 학회주요소식 •

한국교육행정학회		홈페이지 : http://www.keas.or.kr E-Mail : keas1967@hanmail.net		
학 회	주 소	(02841) 서울 성북구 안암로 145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본관 213호	전화번호	02-3290-5325
회 장	성 명	신현석(고려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전화번호	02-3290-2302
			E-mail	hsshin01@korea.ac.kr
사무국장	성 명	주영호(동국대학교-경주 교직부 교수)	전화번호	054-740-4752
			E-mail	youngmonet@dongguk.ac.kr
간 사	성 명	정수현, 장아름, 홍세영, 김혜연(고려대학교), 안지윤(중앙대학교)	전화번호	010-6444-0805
			E-mail	keas1967@hanmail.net

학술지명

교육행정학연구(The Journa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 『교육행정학연구』는 2015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학술지 계속평가에서 사회과학분야의 등재학술지 자격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교육행정학연구』에 많은 관심과 투고 바랍니다.

※ 올해부터 『교육행정학연구』의 발간이 연 4회에서 5회로 증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접수 및 발간일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권 · 호		논문 투고 마감일	발간 예정일
34권	1호	2016년 2월 29일	2016년 4월 30일
	2호	2016년 4월 30일	2016년 6월 30일
	3호	2016년 6월 30일	2016년 8월 31일
	4호	2016년 8월 31일	2016년 10월 31일
	5호	2016년 10월 31일	2016년 12월 31일

※ 문의 : 안지윤 편집간사(010-3866-3304, keas1967@nate.com)

2016년도 제1차 이사회 개최

가. 일시 : 2016년 2월 22일 (월) 오전 11시 ~ 오후 2시

나. 장소 : 서울역 공항철도터미널 지하 2층 '명가의 뜰'

다. 안건 : 2016년도 임원 및 위원회 소개, 사업계획 및 예산안 보고

직 분	성 명
회 장	신현석(고려대)
부회장	주철안(부산대)
감 사	이석열(남서울대), 김민희(대구대)
분과위원장 (가나다 순)	고전(제주대, 기획·홍보위원장), 김병주(영남대, 대외협력위원장), 김병찬(경희대, 학술위원장), 김이경(중앙대, 편집위원장), 김희규(신라대, 조직·규정위원장), 나민주(충북대, 재정·기금위원장), 남정걸(단국대, 소석논문상위원장), 박상완(부산교대, 학술편찬위원장), 신상명(경북대, 부회장선출위원장), 신재흠(한성대, 윤리위원장), 오세희(인제대, 정책연구위원장), 안선희(중부대, 포럼운영위원장), 이수정(단국대, 영문편집위원장), 박선형(동국대, 국제학술위원장), 조석훈(가천대, 학회발전위원장),
사무국	주영호(동국대, 사무국장), 정수현(고려대, 총무간사), 장아름(고려대, 총무보조간사), 안지윤(중앙대, 편집간사), 홍세영(고려대, 영문편집간사), 김혜연(고려대, 포럼간사)

국문학술지 증편 및 영문학술지 신규 발행 안내

가. 국문학술지 <교육행정학연구> 연 4회에서 5회로 증편

- 논문 접수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학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관련 문의처 : 안지윤 편집간사(010-3866-3304, keas1967@nate.com)

권 · 호	논문 투고 마감일	발간 예정일
34권	1호	2016년 2월 29일
	2호	2016년 4월 30일
	3호	2016년 6월 30일
	4호	2016년 8월 31일
	5호	2016년 10월 31일

나. 영문학술지 <Journa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and Policy> 신규 발행

- 관련 문의처 : 홍세영 영문편집간사(010-7161-8911, edusunshine@naver.com)

2016년도 춘계학술대회 일정

가. 주제 : 한국적 교육행정학 이론 정립: 한국 교육행정학의 주요 가치 탐색

나. 일시 : 2016년 5월 21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 오후 5시

다. 장소 : 운초우선교육관 203호

마. 세부 일정

시 간	발 표 및 내 용	사 회
09:00~09:40	등록 및 접수	
09:40~10:00	개회식 • 개회사 : 신현석(한국교육행정학회장) • 축 사 : 염재호(고려대학교 총장)	주영호(사무국장)
10:00~10:40	〈기조강연〉 • 주 제 : 한국 교육행정학의 주요 가치 • 발 표 : 이종재(서울대)	김이경(중앙대)
10:40~11:40	〈주제발표1〉 한국 교육행정학에서 '자율성' 가치의 의미 구조와 맥락 • 발 표(20분) : 성병창(부산교대) • 토 론(20분) : 이차영(한서대), 박균달(경기 초당초 교사) • 청중토론(20분)	
11:40~12:40	〈주제발표2〉 한국 교육행정학에서 '수월성' 가치의 의미 구조와 맥락 • 발 표(20분) : 김인희(교원대) • 토 론(20분) : 천세영(충남대), 박하식(충남 삼성고 교장) • 청중토론(20분)	
12:40~13:40	점심식사	
13:40~14:40	〈주제발표3〉 한국 교육행정학에서 '정의' 가치의 의미 구조와 맥락 • 발 표(20분) : 유길한(진주교대) • 토 론(20분) : 이종각(강원대), 정용주(서울 염경초 교사) • 청중토론(20분)	변기용(고려대)
14:40~15:40	〈주제발표4〉 한국 교육행정학에서 '전문성' 가치의 의미 구조와 맥락 • 발 표(20분) : 조석훈(가천대) • 토 론(20분) : 박남기(광주교대), 이수광(경기도교육연구원 부장) • 청중토론(20분)	
15:40~15:50	휴식시간	
15:50~16:50	종합토론 및 논의	좌장 : 허병기(한국교원대)
16:50~17:20	이사회 및 총회(예정)	주영호(사무국장)
17:20~17:30	폐회식 • 감사패 증정 • 폐회사 : 신현석(한국교육행정학회장)	

회원가입 및 연회비 납부 안내

가. 회원가입 : 학회 홈페이지(www.keas.or.kr)

나. 회비납부 : 학생회원(석사과정) 3만원, 정회원(박사과정 이상) 5만원, 기관회원 10만원

– 계좌번호 : 우체국 613844-01-005503 (예금주 : 한국교육행정학회)

– 신규회원인 경우 가입비 1만원 별도로 납부

– 관련 문의처 : 장아름 총무보조간사(010-4543-5624, keas1967@daum.net)

회원가입 및 회비납부 현황(2016년 4월 28일 기준)

2016년 신입회원 회비 납부명단(2016년 1월 1일 ~ 4월 30일)

강선영, 곽주철, 권동택, 권상순, 권은경, 권혁진, 김경숙, 김민경, 김본영, 김술, 김정원, 김창용, 김현철, 김희란, 모화숙, 문영진, 민수빈, 민천홍, 박유미, 서재영, 송경하, 신혜숙, 심정연, 오예진, 오유진, 오현석, 우허난, 윤유진, 윤초희, 이경오, 이용주, 이주희, 임예진, 임재욱, 장귀덕, 정선희, 조진한, 진동선, 최윤호, 홍정순, 황석, 황은희

2016년 기존회원 회비 납부명단(2016년 1월 1일 ~ 4월 30일)

가신현, 강은숙, 고득환, 고전, 광경희, 권순형, 권초아, 김갑성, 김경민, 김관래, 김규태, 김근진, 김도기, 김민희, 김병찬, 김세정, 김용남, 김용일, 김용, 김용주, 김윤진, 김은정, 김인희, 김정현, 김지현, 김지혜, 김하나, 김현숙, 김현진, 나임, 남미자, 남해진, 려군, 류민영, 류윤석, 문영빛, 문찬주, 민경준, 민병제, 박균열, 박대권, 박선주, 박선형, 박세훈, 박수미, 박수연, 박수정, 박영숙, 박예진, 박종필, 박주미, 박주형, 박해경, 반상진, 배상훈, 배지혜, 백규호, 백정하, 백종면, 변수연, 석혜정, 성삼제, 송경오, 신봉섭, 신유식, 신재성, 신재홍, 신철균, 신하균, 신현석, 심정연, 안성주, 안영선, 안영은, 엄문영, 엄준용, 엄민호, 오경희, 오범호, 우명숙, 위은주, 유경훈, 유길한, 유재환, 유지은, 유현숙, 윤권수, 윤기현, 윤소희, 윤정, 윤정인, 윤지희, 이경옥, 이경호, 이미심, 이상문, 이상철, 이선아, 이승연, 이승호, 이영내, 이영철, 이은진, 이은화, 이인수, 이인희, 이일용, 이재덕, 이재봉, 이지영, 이창열, 이혜미, 이호미, 이희숙, 임소현, 임연기, 임우섭, 임채안, 전병식, 전승희, 전재은, 정기오, 정동욱, 정묘진, 정성수, 정수현, 정원숙, 정재균, 정재안, 정제영, 정주영, 정현주, 조미애, 조영재, 조영하, 주현준, 차성현, 채재은, 채정관, 최경준, 최광원, 최상영, 최선향, 최윤정, 최정윤, 최준열, 하정윤, 한대동, 한유경, 허경일, 홍성철, 홍창남, 황윤환

2016년 이사회비 납부명단

김도기, 김병주, 김병찬, 김이경, 김희규, 박선형, 박영숙, 배상훈, 신재홍, 신철균, 이정기, 전제상, 조남두, 조석훈, 조영하, 최창섭

2016년 기관회원 회비 납부명단

가톨릭대학교 도서관, 거제대학교 도서관, 광주교육대학교 도서관, 교원대학교 도서관, 남서울대학교 도서관, 영남대학교 도서관, 전북교육연구정보원, 전주교육대학교 도서관, 한국경기도교육연구원, 합동군사대학교

※ 연회비를 납부하시고도 위 명단에 기재가 되지 않은 경우, 학회 사무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연회비 납입 시 반드시 '성명' 과 '연회비' 로 기재하여 이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연회비 납부계좌 : 우체국 613844-01-005503(예금주 : 한국교육행정학회)

※ 10월에 있을 부회장 선거에는 2015년 회비 및 미납회비가 없는 회원만 선거권이 주어집니다. 선거권을 행사하실 회원님께서 회비납부현황을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뉴스레터 온라인 전환 안내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여 금호(제122호)부터 뉴스레터는 온라인으로만 발간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학술지 논문게재 안내

■ **원고접수** : 수시 접수체제로 운영(홈페이지 접수)

권 · 호		심사접수 마감일	발간예정일
제34권 (2016)	1호	2월 29일	4월 30일
	2호	4월 30일	6월 30일
	3호	6월 30일	8월 31일
	4호	8월 31일	10월 31일
	5호	10월 31일	12월 31일

■ **논문 심사 적부 판정**

논문 본 심사에 앞서 ‘교육행정학’ 논문에 대한 적부심사를 편집위원회에서 거칠 예정(‘적’으로 판정되면 논문 심사 진행, ‘부’로 판정되면 심사비 환불 및 심사 진행 불가)

■ **원고분량**

- ① A4용지 20페이지(참고문헌, 영문초록 포함)
- ② 이를 기준으로 20페이지를 초과할 수 없으며, 20페이지 초과 시 1페이지 당 2만원 추가
- ③ 규정개정으로 인하여 최대 30페이지를 초과하는 논문은 접수하지 않음

■ **심사료** : 100,000원(외국어 논문 심사료 150,000원)

■ **게재료**

- ① 입금시기 : 심사결과 ‘게재가’로 결정된 후에 입금
- ② 게 재 료 : 연구비 수혜를 받아서 게재된 논문은 400,000원 이상
연구비 수혜 없이 작성된 논문은 200,000원 이상
- ③ 납부방법 : 학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카드결제 또는 계좌이체
- 입금계좌 : 우체국 613844-01-005503(예금주: 한국교육행정학회)

■ **기타** : 접수 마감 당일 자정까지 접수하며 기한을 넘긴 논문은 다음 호 심사료 이관됨

- 관련 문의처 : 안지윤 편집간사(010-3866-3304, keas1967@nate.com)

회원주소 및 연락처 정비

- 인적사항에 변동이 있으신 회원님께서서는 홈페이지 개인정보를 수정하신 후에 학회 메일(keas1967@hanmail.net)이나 홈페이지 질의응답에 글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 학회에서 안내해 드리는 각종 소식이나 메일이 도착하지 않는 회원님들께서는 학회 홈페이지(www.keas.or.kr)에 접속하셔서 설정해 놓은 이메일 주소를 확인하신 후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학회 메일(keas1967@hanmail.net) 또는 홈페이지 질의응답에 글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학회비 납부 안내

- 본 학회 회칙 제9조 회원의 자격상실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2년 이상 학회비를 미납한 경우 회원자격이 상실됩니다. 아울러 회비가 2년 이상 연체된 회원들은 학회 홈페이지 내 자료 접근이 제한됩니다. 자격 회복을 원하시는 경우 학회 회칙 제9조 내지 제10조를 참조하시고 사무국(010-6444-0805)으로 연락바랍니다.
- 학회 회비가 연체된 경우는 학회 회원으로 누릴 수 있는 어떠한 권한(학회지 배송, 학회지 투고, 소식지 동향 기재, 부회장 투표권 등)도 부여되지 않습니다. 연체된 회비는 학회 홈페이지 로그인 후 '결제정보확인' 버튼을 누르면 확인할 수 있으며, 연체된 내역은 개인 메일이나 유선전화로 개별 통보해 드리지 않습니다. 또한 연회비, 학회 논문 심사비 및 게재료는 학회 홈페이지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 연회비 안내

- 입회비 : 10,000원
- 연회비 : 일반회원 50,000원, 학생회원 30,000원, 기관회원 100,000원
- 회비납부 계좌 : 우체국 613844-01-005503 (예금주 : 한국교육행정학회)
- 학회 홈페이지(www.keas.or.kr)에서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

2016년 제44대 한국교육행정학회 사무국 주소 및 전화번호

- 주 소 : (02841) 서울 성북구 안암로 145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본관 213호
- E-mail : keas1967@hanmail.net
- 전화번호 : 010-6444-0805
- 회 장 : 신현석 (고려대학교)
- 부회장 : 주철안 (부산대학교)
- 사무국 : 사무국장 주영호 (동국대학교)

총무간사 정수현 (010-6444-0805) keas1967@daum.net

편집간사 안지윤 (010-3866-3304) keas1967@nate.com

제44대 한국교육행정학회 임원

■ 회장단

- 회 장 : 신현석(고려대학교)
- 부 회 장 : 주철안(부산대학교)
- 감 사 : 이석열(남서울대학교), 김민희(대구대학교)

■ 이사회

• 당연직 위원 34명 (가. 나. 다 순)

김영식, 신극범, 김재범, 신철순, 정태범, 김명한, 남정길, 이형행, 강영삼, 윤정일, 신중식, 곽영우, 최희선, 한경수, 김신복, 주삼환, 이종재, 서정화, 노종희, 강무섭, 강인수, 정진환, 박종렬, 정영수, 김명수, 신재철, 송광용, 임연기, 허병기, 이윤식, 박세훈, 김성열, 신현석, 주철안

• 선임직 위원 61명 (가. 나. 다 순)

강경석(인하대), 고 전(제주대), 김 용(청주교대), 김갑성(교원대), 김규태(계명대), 김남순(조선대), 김도기(교원대), 김동석(한남대), 김병주(영남대), 김병찬(경희대), 김왕준(경인교대), 김이경(중앙대), 김인희(교원대), 김재웅(서강대), 김현진(국민대), 김혜숙(연세대), 김홍주(KEDI), 김희규(신라대), 나민주(충북대), 남수경(강원대), 박남기(광주교대), 박상완(부산교대), 박선행(동국대), 박영숙(KEDI), 박종필(전주교대), 박주호(한양대), 반상진(전북대), 배상훈(성균관대), 변기용(고려대), 송경오(조선대), 송기창(숙명여대), 신상명(경북대), 신재홍(한성대), 신정철(서울대), 신철균(KEDI), 안선희(중부대), 양성관(건국대), 양정호(성균관대), 오세희(인제대), 오영재(고려대), 유현숙(KEDI), 이명주(공주교대), 이병환(순천대), 이수정(단국대), 이정기(백석대), 이차영(한서대), 조홍순(중부대), 장덕호(상명대), 전제상(공주교대), 정성수(대구교대), 정수현(서울교대), 조남근(세명대), 조남두(신구대), 조석훈(가천대), 조영하(경희대), 차성현(전남대), 천세영(충남대), 최준렬(공주대), 최창섭(강릉대), 한유경(이화여대), 홍창남(부산대)

■ 분과위원회 구성

• 기획·홍보위원회

- 위원장 : 고전(제주대) - 부위원장 : 김갑성(교원대)
- 위 원 : 김성기(협성대), 김순남(KEDI), 박인심(서울여대), 백정하(대교협), 이덕난(국회입법조사처), 이차영(한서대), 차성현(전남대), 황준성(KEDI)

• 학술위원회

- 위원장 : 김병찬(경희대) - 부위원장 : 송경오(조선대)
- 위 원 : 김가신현(고려대), 김민조(청주교대), 김왕준(경인교대), 김현진(국민대), 박대권(성균관대), 박수정(충남대), 신철균(KEDI), 유경훈(광주교육정책연구소), 유길한(진주교대), 이길재(충북대), 정동욱(서울대)

• 편집위원회

- 위원장 : 김이경(중앙대) - 부위원장 : 이석열(남서울대)
- 위 원 : 고장완(성균관대), 박균열(KEDI), 반상진(전북대), 우명숙(한국교원대), 이재덕(KEDI), 이혜미(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전제상(공주교대), 정성수(대구교대), 정제영(이화여대), 채재은(가천대)

• 영문편집위원회

- 위원장 : 이수정(단국대) - 부위원장 : 김용련(한국외대)
- 위 원 : 김근진(서울대), 박혜영(고려대), 변수연(부산외대), 서재영(충북대), 엄문영(경인교대),
오예진(영남대), 이길재(충북대), 전재은(세명대), 주현준(대구교대), 허주(KEDI)

• 국제학술위원회

- 위원장 : 박선휘(동국대) - 부위원장 : 박소영(숙명여대)
- 위 원 : 박삼철(단국대), 전수빈(동국대), 정바울(KEDI), 조영하(경희대), 주동범(부경대), 황윤한(광주교대)

• 학회발전위원회

- 위원장 : 조석훈(가천대) - 부위원장 : 김민희(대구대)
- 위 원 : 김근진(서울대), 김훈호(KEDI), 박주형(경인교대), 박창언(부산대), 박호근(한국체대),
엄문영(경인교대), 이태상(상지대), 장덕호(상명대)

• 대외협력위원회

- 위원장 : 김병주(영남대) - 부위원장 : 변기용(고려대)
- 위 원 : 강석(광주교육정책연구소), 박엘리사(송실대), 서지영(대교협), 서화정(영남대), 윤기현(KICE), 이쌍철(KEDI),
채정관(감사원), 최원석(충북대), 한상윤(서울시학생교육원)

• 조직·규정위원회

- 위원장 : 김희규(신라대) - 부위원장 : 유평수(전주대)
- 위 원 : 김경윤(중앙대), 김한나(KEDI), 류준근(서울과학기술대), 이병환(순천대), 이원근(평생교육진흥원),
이준희(영동대), 정금현(교육부)

• 재정·기금위원회

- 위원장 : 나민주(충북대) - 부위원장 : 박수정(충남대)
- 위 원 : 김지하(KEDI), 남수경(강원대), 송선영(대교협), 신정철(서울대), 오범호(경남대), 이병식(연세대),
이미라(영남대), 정재균(전북교육정책연구소)

• 학술편찬위원회

- 위원장 : 박상완(부산교대) - 부위원장 : 홍창남(부산대)
- 위 원 : 김용(청주교대), 김홍섭(전 교육부·독산고), 양성관(건국대), 염민호(전남대), 유길한(진주교대),
이기성(서울사대부고), 이명숙(서울종암초), 장덕호(상명대), 전상훈(고려대)

• 윤리위원회

- 위원장 : 신재흡(한성대) - 부위원장 : 신봉섭(나사렛대)
- 위 원 : 구희완(그리스도신학대), 권동택(교원대), 김기선(인천광성중학교), 배상훈(성균관대),
엄준용(중부대), 이두영(인천대), 이정기(백석대)

• 정책연구위원회

- 위원장 : 오세희(인제대) - 부위원장 : 이인희(제주대)
- 위 원 : 권혁진(한림공고), 김무영(경운대), 김정희(대교협), 박상욱(동의대), 이일권(서울휘봉초), 이필남(홍익대),
장환영(동국대), 하정윤(순천제일대)

• **포럼운영위원회**

- 위원장 : 안선희(중부대) - 부위원장 : 손희권(명지대)
- 위 원 : 김수경(평택대), 김영식(KRIVET), 김지영(극동대), 김현진(국민대), 노명순(여의도연구원), 이경호(고려대),
이준희(영동대), 주휘정(KRIVET), 하봉운(경기대)

• **부회장선출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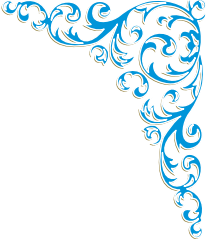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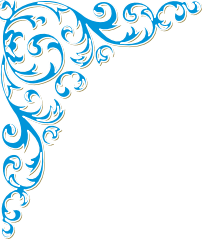
- 위원장 : 신상명(경북대) - 부위원장 : 김도기(한국교원대)
- 위 원 : 김갑성(한국교원대), 김규태(계명대), 김왕준(경인교대), 박종필(전주교대), 신철균(KEDI), 양성관(건국대),
전제상(공주교대), 차성현(전남대)

• **소석논문상위원회**

- 위원장 : 남정걸(단국대) - 부위원장 : 강영삼(국민대)
- 위 원 : 강무섭(강남대), 강인수(수원대), 노종희(한양대), 신중식(국민대), 신현석(고려대), 이종재(서울대),
주삼환(충남대)

■ **사무국**

- **사무국장** : 주영효(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 **총무간사** : 정수현(고려대학교), 장아름(고려대학교)
- **편집간사** : 안지윤(중앙대학교)
- **영문학술지 편집간사** : 홍세영(고려대학교)
- **포럼간사** : 김혜연(고려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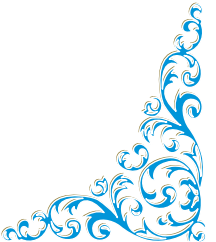


한국교육행정학회 윤리 헌장

한국교육행정학회 윤리헌장은 회원이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윤리적 원칙과 기준을 정하여 본 학회는 물론 회원 개인의 윤리성을 고양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다음의 대안을 준수해야 한다.

- ① 회원은 학회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성실하게 의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② 회원은 학회 활동을 통하여 교육행정학과 한국교육행정의 발전에 기여하고 공익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 ③ 회원은 학술활동 관련 법률 및 학회 윤리규정, 학계에서 권장하는 기본적인 연구 학술 윤리를 준수하여야 한다.
- ④ 회원은 타인의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지 아니하며, 타인의 저작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 ⑤ 연구관련 심사 및 자문을 하는 회원은 학문적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제출자와 제출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⑥ 회원은 연구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이득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⑦ 회원은 연구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 ⑧ 회원은 학술활동 관련 연구대상자 및 연구보조자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2007. 4. 27



한국교육행정학회